##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49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천하람・이준석・이주영

정성호 • 주철현 • 김용태

최기상 · 황운하 · 홍기원

이성권 • 박민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 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 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 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	<삭 제	>			
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					
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					
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					
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u>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u>					
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					
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